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모집 공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업내용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31일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여가 활동 증진 및 국내관광 활성화

나. 주요내용: 근로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용해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 총 지원규모: 최대 500명

※ 적립금 조성: 총 적립금 40만원 = 참여 근로자 15만원 + 서울시 25만원

※ 적립금 사용: (사 용 처) 사업 전용 온라인몰(www.seoulvacation.kr)

(사용기한) 2023년 7월 ~ 2023년 11월 19일

다. 참여절차

신청자		서울시		신청자		서울시		신청자
참여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 서류심사 - 서류 보완 기간 (6.24.~6.28.) - 선정자 발표(7.6.)	⇒	가상계좌에 근로자 분담금 15만원 입금	⇒	입금 확인 및 서울시 분담금 25만원 지급	⇒	신청자 '적립금 40만원'으로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상품 구매
6.7. ~ 6.14.		6.15. ~ 7.6.		7.6. ~ 7.9.		7.10.		7.10. ~ 11.19.

※ 1차 서류심사 후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완 요청, 보완 기간 내 서류 재제출 필요

※ 사업 전용 온라인몰은 사업 참여자만 접속 가능한 폐쇄몰로 운영되며, 국내여행상품(여행패키지, 숙박, 체험/입장권, 캠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2. 신청대상

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로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1) 모집 공고일(2023.5.31.)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

2) 모집 공고일(2023.5.31.)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플랫폼노동 종사자 포함)인 근로자

3)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

※ [붙임1] 사업 참여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 별 정의 참고

※ 2022년도 사업 미수혜자 우선선발(모집정원 초과 접수 시 2022년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나. 자격조건 증빙서류 목록

1. 거주지 및 연령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모집 공고일(2023.5.31.) 이후 발급된 문서로 서울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
2. 고용형태	2-1. 비정규직 근로자	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을 '전체'로 설정하여 발급) 2. (필수) 근로계약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집 공고일(2023.5.31.)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됨 - 비정규직은 모집 공고일(2023.5.31.)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모집 공고일(2023.5.31.)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 직인과 본인 날인 필수 -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종사자	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을 '전체'로 설정하여 발급) 2. (필수)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등 노무 제공 증빙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집 공고일(2023.5.31.)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모집 공고일(2023.5.31.)의 피보험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 고용형태 증빙서류 예시 • 업무위탁계약서, 도급/용역/위촉/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프리랜서 명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 결과통지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등 •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최근 3개월 이내 근로내역 및 급여 입금 내역 제출 필수 - 해당하는 노무 제공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붙임1)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사업자 날인 및 입금 내역 필수 제출) - 급여 입금 내역 제출 시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통장사본 첨부 등), 급여에 해당하는 내역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

3. 소득증빙	3-1.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필수) 소득금액증명(2021년도 혹은 2022년도 귀속분) - 모집 공고일(2023.5.31.)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국세청(홈택스)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 > 발급유형(한글증명) > 증명구분(해당사항 선택) > 과세기간(2021, 2022) > 사용용도(관공서제출) > 제출처(관공서) > 신청
	3-2. 소득이 없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한 사실 등이 없는 자)	(필수) 사실증명원(2021년도 혹은 2022년도 귀속분) - 모집 공고일(2023.5.31.)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사실증명원 제출 - 국세청(홈택스) 발급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신청/조회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 신청

〈인정 불가능한 서류 유형〉

공통	① 열람용 문서 ② 엑셀, 한글 및 워드 파일 등 임의로 수정이 가능한 서류 ③ 저화질, 서류 일부 노출 등 정보 확인이 어렵거나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열람할 수 없는 문서 - 신청자 정보, 발급기관/일자/직인, 페이지 수 등 서류상 모든 내용이 확인 가능해야 함 - 단,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를 안 보이게 처리하여 제출 ④ 제출 서류 페이지 일부 누락 - 서류가 2장 이상일 경우 모든 페이지를 제출해야 함. 1페이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업로드 불가하므로, 알집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해야 함 ⑤ 본인 및 대표자 서명 및 발급처 직인 누락
주민등록 등본·초본	① 모집공고 시작일(2023. 5. 31.) 이전에 발급된 문서 ② 주소 발생일/신고일 미표기, 주소 발생일이 모집접수 시작일 이후인 경우
고용형태 확인 서류	① 고용형태 및 계약만료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모집접수 시작일 기준 계약기간이 만료된 서류 ② 현재 재직 여부 혹은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③ 사업장 직인 및 본인 성명(서명)이 누락된 서류
소득증빙 서류	① 2021년 혹은 2022년 귀속 소득자료가 아닌 경우 ②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장에서 발급된 문서 등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서류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년 6월 7일(수) 10시 ~ 6월 14일(수) 23시**

나. 신청방법: 근로자 개인단위 온라인 신청

다. 신청서 제출: 웹사이트(www.seoulvacation.kr)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라. 신청문의

1) 전화: 서울관광재단 02-3788-8156 / 이메일: vacation@sto.or.kr

2) 서울형 여행마우처 사업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 > ‘가이드라인’ 참조

※ 현장 방문 접수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4. 선정방법

가. 2023년 서울형 여행마우처 지원 사업 추가모집의 선정 인원은 최대 500명

나. 전체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 미달 인원에 대해 추가모집을 진행

다. 전체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 신규 참가자 중 서류 적격자를

우선선발하고, 이외의 인원은 22년도 기수혜자 중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 및 예비 지원대상자 선발

※ 신규 신청자는 '22년도 사업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를 의미함

라. 추가모집 신규 참가자 중 서류 적격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참가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지원대상자 및 예비 지원대상자 선발

마. 예비 지원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선발하며 무작위로 예비번호를 부여

※ 선정자의 근로자 분담금 미입금, 중도포기 등에 의한 결원 발생시 예비번호 순으로 추가 선정

5. 유의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함. 추후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음

나. 온라인 신청서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다. 현재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음

라. 참여자 선정 후 해당 기간(7.6. ~ 7.9.) 이내에 개별 가상계좌에 근로자 분담금(15만원) 입금을 완료한 근로자에 한하여 서울시 분담금을 지원함

마.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www.seoulvacation.kr)함

※ 코로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상품 이용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바.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www.sto.or.kr) 및 사업 홈페이지(www.seoulvacation.kr)를 통해 공지함

붙임1 사업 참여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 직종 예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택배사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함)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함)
7.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8.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9.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10.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함)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다만, 3. 및 11.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4. 규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의 사람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으로 한정)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2) 플랫폼노동 종사자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 (배달, 번역 플랫폼 등)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경우에 해당함

붙임2 노무 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노무 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대표자)				
	소재지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업종				
	근로자 수				
	연락처				
□ 근로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상기 사업장 대표 ()은(는) ()이(가) 동 사업장에서 20 . . . ~ 20 . . . (또는 ()월) ()에서 아래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①업무 내용: ②업무 장소: <수당 지급 내역> (2023.3.~2023.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지급금액</td> <td style="width: 80%;"></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right;">원</td> </tr> </table> ※ 통장 입금내역서 첨부 필수 2023년 월 일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지급금액		원
지급금액		원			